
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변경 대비표

빌리언폴드자산운용(주)

1. 내규 명칭 :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

2. 변경시행일 : 2025년 9월 11일

3. 변경사유
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「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」이 일부 개정 됨. 이에 따라 당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도 일부 개정함.

4. 변경 주요 내용

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

- ▲ (수행업무 강화) 준법·내부통제·소비자보호가 중시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 하는 업무를 강화
- ▲ (성과보상체계 사전합의 등) 판매임직원등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합의를 의무화 및 필요시 개선요구

② 휴면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

- ▲ 금융상품 만기 시 안내방법, 만기 이후 안내방법, 동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조직 운영 등 휴면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일반 원칙 제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10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)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2.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·운영 3.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 4. 금융상품의 개발,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점검 및 조치 5. 민원·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	<p>제10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)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2.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·운영 3.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 4. 금융상품의 개발,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점검 및 조치 5. 민원·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6. 이 기준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기준의 적정성·준수실태에 대한 점검·조치 7.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"라 한다), 감독(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"감독"을 말한다) 및 검사(법 제50조에 따른 "검사"를 말한다)

<p>6.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</p> <p>7. 제18조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</p> <p>8.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)</p> <p>9. 제8조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 관련 내부규정 등 수립에 관한 협의</p> <p>②~④ (생략)</p>	<p>결과의 후속조치 관리</p> <p>8.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</p> <p>9. 제18조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</p> <p>10.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(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)</p> <p>11. 제8조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 관련 내부규정 등 수립에 관한 협의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1조(금융상품의 개발,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법령 및 계약상 권리를 청구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, 휴면 및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1. 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휴면 및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 및 감축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2. 상품의 신규가입·유지 단계에서 금융상품 만기 시 처리방법(재예치·입금계좌 설정 등) 및 만기통보방법 지정 등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는 한편,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21조(금융상품의 개발,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법령 및 계약상 권리를 청구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삭 제 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삭 제 ></p> <p>④ 회사는 휴면·장기미거래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단, 회사는 위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1. 금융상품 만기 시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재산의 처리방법 안내의 시기 및 내용(만기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 사항 등)에 관한 사항</p> <p>2. 금융상품 만기 이후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재산 안내의 시기, 내용(만기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 사항 등), 방법 및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3.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<p>제35조(성과보상체계의 평가 및 논의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매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기 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 확인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 관련 임직원등에게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 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, 검토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(내부통제위원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생략)</p> <p>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보고 시 필요한 경우 판매임직원등에 대한 성과평가지표(KPI) 조정을 포함한 평가·보상체계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.</p> <p>⑥ (생략)</p>	<p>제35조(성과보상체계의 평가 및 논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매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기 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 합의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 관련 임직원등에게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 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, 검토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(내부통제위원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보고 시 필요한 경우 판매임직원등에 대한 성과평가지표(KPI) 조정을 포함한 평가·보상체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 신 설 ></u></p>	<p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5년 9월 1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</p>